2022년 대비

노 고 단

노동법 고득점 단기특별반

방 강 수

- 연세대학교 졸업
- 제14회 공인노무사 2차 차석 합격
- 한양대 법학과 석사 및 박사 졸업
- · 노동판례리뷰 집필진
- 한국노동법학회 출판이사

• [취] 방강수, 「요약노동법」, 출간예정(※ <u>수강생 한</u> 정 판매)

교 재

- [부] 방강수, 「노동법 원포인트 판례 170선」 제4판(2022.1월 출간)
- 총 10회 / 오후 강의(2:00~5:30)

일 정 장의일(2022. 2월)
14(월), 15(화), 17(목), 18(금), 20(일)
21(월), 22(화), 24(목), 25(금), 26(토)

내 용

• 분량은 줄이고 점수는 올리고

"혁신은 덜어내는 것이다"

- 분량은 줄이고 점수는 올리는 게 가능할까요?
 - Yes,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덜어내면 됩니다.
- 최초의 "사례 포함" 요약서 「요약노동법」
 - 방강수의 첫 요약서
 - 2020년까지 진행한 "2기·3기 모의시험 해설답안" 기반 요약서(사례 문제 및 해설 포함)
 - 요약서, 그 이상의 요약서
 - 사례가 포함됐음에도 "380여 페이지"의 컴팩트한 분량
 - 개정법 및 최신판례 모두 업그레이드 완료

■ 부교재(판례 170선)는 수업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 요약서는 암기해야 할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판례의 "사건개요"와 "구체적 판단"을 보기 위해 판례집(부교재)이 필요합니다.
- 부교재는 수업시간에 간단하게 보충용으로 봅니다. 다른 판례집을 활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가급적 '시너지 up'을 위해 「판례 170선」을 권장합니다.

■ 강의 특징

- 2기·3기 모의시험 과정을 제대로(빡세게) 소화한 후 2차시험을 경험한 분들, 즉 상당한 실력을 갖춘 분들을 위한 특강입니다.
- 수강 금지 : 초시생, 올림픽정신으로 2차시험 경험한 재시생

〈요약노동법 목차 & 회차별 강의 내용〉

회차	강의 내용	회차	강의 내용
1회 2/14.月	001 노동3권의 법적 성격 0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003 균등처우 원칙 등 004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005 중간착취의 배제 006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의무 007 임금청구권과 취업청구권 008 경업금지약정과 연수비반환약정 009 사이닝보너스 약정 010 채용내정 011 시용(試用) 012 개인실적급의 임금성 및 임금채권우선변제 013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통화지급원칙	6회 2/21.月	068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한 총기간 산정 ① 069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한 총기간 산정 ② 070 정규직 전환기대권 071 파견 판단기준과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072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073 비정규직 차별 금지 074 비정규직 차별에서 범주별 판단 075 업무상 재해의 주요 쟁점 076 첨단산업 회귀질환 077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기준 및 교섭단위 분리 078 해고자와 불법체류외국인의 근로자성 079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080 노동조합 설립 심사 및 법외노조의 지위 081 노동조합 설립 무효
2室 2/15.火	014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015 평균임금 산정방법 016 통상임금 판단기준 017 통상임금 뿐단기준 017 통상임금 분쟁 시 신의칙 및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018 임금지급원칙 019 휴업수당 :중간수입공제 및 경영상 대기발령 020 근로시간 판단기준 021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022 포괄임금약정 023 연차유급휴가의 요건과 휴가일수 024 주휴임금과 연차수당 025 연차사용권과 연차수당 026 연차휴가 산정시 '정지' 기간의 처리 027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7호 2/22.火	082 기업별노조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활동 083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 구분 및 소집절차 084 간접적인 대의원 선출규정의 효력 085 조합활동의 정당성 086 노조업무 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 제도 087 노조전임자의 출근의무 및 노조업무 중의 재해 088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 089 노동조합의 통제권 090 조직형태변경 091 지부・지회의 단체교섭 주체성 092 단체교섭의 담당자 093 노조대표자의 내부 절차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094 노조대표자의 내부 절차 위반 및 평화의무 위반 의 쟁의행위
3회 2/17.木	02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029 취업규칙에서 동의 주체 및 변경 후 신규입사자 030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방법 031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성 원칙 032 전직의 정당성 034 존직의 정당성 035 정계의 의의와 사유의 정당성 036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 037 직위해제 · 대기발령 038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039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여부 및 징계의 사유· 양정의 정당성 040 영업양도 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	8 회 2/24.木	095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개요 096 유일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097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성격 098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099 단체교섭대상 판단기준과 노조활동사항 100 구조조정과 단체교섭대상 101 준법투쟁 102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103 정치파업의 정당성 104 조정전치주의 105 2차 쟁의행위 시 별도의 절차 여부 106 쟁의행위 찬반투표 및 직장점거·피케팅 107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 108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장 점거의 정당성
4호 2/18.金	041 영업양도 시 승계거부권 및 근로조건 승계 042 회사 분할 043 법률규정에 의한 공법인 변동 044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045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해고 046 경영해고의 긴박성과 근로자대표 협의 047 경영해고 시 근로자대표의 의미 048 경영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049 경영해고 대상자 선정 050 경영해고 학의 우선재고용의무 051 파산절차 진행 중의 해고 052 일부 사업 폐지와 해고의 정당성 053 해고 금지 기간 054 해고 무효 시 해고예고수당의 반환 여부	9회 2/25.金	109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의무 110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111 직장폐쇄 112 태업기간의 임금 등 113 단체협약 성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11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의 유리성 원칙 115 협약자치의 한계 116 단체협약 소급 동의 및 노동관행 117 단체협약의 해석 118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 조항 119 해고합의조항 120 고용안정협약과 산재유족 특별채용 협약 121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및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여부
5호 2/20. 日	055 해고 서면 통지 056 단체협약・취업규칙 해고사유 관계 및 학력사칭 해고 057 당연퇴직규정과 징계절차 058 근로계약 취소 059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060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061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구제 062 부당해고 구제절차 시 구제이익 063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구제 ① 064 부당해고에 대한 사법구제 ② 065 퇴직금과 금품청산 066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067 기간제한 예외사유 및 무기간주자의 근로조건	10堂 2/26.土	122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조건, 대체근로 제한 12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2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25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126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주체성 127 불이익취급 ① 128 불이익취급 ② 129 인사고과 불이익취급 및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130 유니언숍 협정, 해고의무 및 미해고 시 지배개입 131 유니언숍 협정, 차고의무 및 신규입사자 132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133 개별교섭과 지배ㆍ개입 134 사용자의 언론활동과 지배ㆍ개입 135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급여 지급